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59

발의연월일: 2020. 8. 25.

발 의 자: 박재호·전재수·최인호

김정호・허 영・김수흥

한병도 · 김경협 · 정춘숙

박용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(법률 제12216호, 2014. 7. 8. 시행)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음.

그러나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등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율이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당초 법 개정 목적과 달리 범죄예방 및 원활한 사고처리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·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제8호·제49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 치하지 아니한 경우

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면허의 취소 등) ① 시·도	제37조(면허의 취소 등) ①
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	
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	
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	
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	
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	
여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8.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
	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
	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9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49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
	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
	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
	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	<u>부과한다.</u>
②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